

대법원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정당한 사유에 해당”



법무뉴스



〈지난 11월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11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게 됐다.

오 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했다. 대법원은 올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

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앞서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병역거부자들과 일선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현재는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동아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사법행정 총괄 ‘사법행정회의’ 신설...
대법원장 권한 분산

– 법관인사에 외부 의견 반영...위원 절반 외부 인사 사법발전위 후속 추진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신설 법원사무 처에는 ‘법관’ 배제

대법원장의 독점 권한이던 법관 인사에 외부 의견이 반영되고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기존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대법원은 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한 건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후속추진단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사법행정의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부분 넘겨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한 일부를 대법원장이나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 중요 사무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근 위원 10명 중 5명은 비법관이 맡는다.



법관위원 5명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고 비법관위원 5명은 새로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사법행정회의 산하에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고 관사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전보인사, 해외연수, 사법행정회의 심의 요청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면 기존 사법행정 업무를 맡았던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대신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가 들어서며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이 업무를 맡게 된다. 법원사무처 사무처장은 사법행정회의가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국무위원 보수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후속추진단은 그동안 총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준비했다.

(CBS 인용)

법무매거진

김명수 대법원장도 특별재판부 반대 ‘위헌 논란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월 7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을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여당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돼 위헌 논란이 있고,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취지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했다. 의견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최종 결제를 받고 나갔다. 안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의견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공식 입장을 입법부에 전달하는데 당연히 대법원장의 의사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본 이유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건배당·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침해 문제도 제기돼 위헌 논란이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경우 오히려 해당 사건에 논란이 커지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건배당·사무분담에 각급 법원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 권한만 강해진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면서 “기획조정실 등 주무부서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일 국회 법사위에 해당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의견조회는 법원조직법 제69조에 따라 통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6명은 지난 8월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심사를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제1심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중앙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대법원장 김명수發
‘사법개혁 쓰나미’ 이제 시작



대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았으나 법원 안팎의 긍정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촛불혁명이 만든 대법원장이라던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조차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 “법원 밖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 빌미를 줬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취임과 함께 “관사 블랙리스트를 찾겠다.”며 칼을 빼 들었으나 찾지 못했고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3차 조사까지 벌였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때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된 10여 명 등 관사 50여 명이 조사를 받아 재판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무려 70명의 검사가 재판거래·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매달려 있다. 매머드급 규모다. 칼날의 끝은 양승태 前 대법원장. “검찰이 민생사범 해소, 부패적결은 안 하고 전직 사법부 수장을 잡기 위해 혈안인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는 말이 국회와 법조계 주변에서 나온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 출신 한 야당 의원의 말이다.

“사건 초기 검사가 50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사 수가 모자라 대검 연구관 6명, 형사부 검사까지 투입해 지금은 70명 정도라는 얘

기 나옵니다. 왜 70명의 검사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합니까. 엄청난 비효율이요 국가적 불행입니다.”

검찰은 지금 속도로는 내년까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서 또한 이 정도 규모의 검사를 투입해 결과물이 없었던 사례는 없었다. 목표는 하나다. 전임 대법원장을 대검청사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것이라는 말이 새 나온다. “어쩌면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과 우려가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 들려온다.

1. 잘나가는 民辯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

사법개혁을 지휘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개혁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서울 서초동 주변은 넘실대는 사법개혁 쓰나미의 높은 파고를 체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법부 코드 인사가 휘몰아치기 때문이다. 서열·직급·관행·직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역이 모두 깨졌다. 답답한 일부 고위직 판사들은 ‘등산할 때도 서열대로 걸었었는데...’라는 반응이다.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90% 가까이를 기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협조의 뜻을 밝혔으나 판사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태업(?)’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대법원장이 수사협조를 밝혔으나 철저히 비협조하고 있다. 판사들의 무더기 영장기각은 사법 방해죄’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법관들은 ‘사법 방해죄’라는 말에 움찔하지만 그러나 원하던 원하지 않은 점점 정치 도그마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부의 정치화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판사들이 정치에 초연하게 재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사법부마저 (판사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

들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현재 서울 서초동 주변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성시대다. 민변 공화국이라는 조어까지 등장했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이끈 주역이 민변인데, 법원개혁도 민변이 주도하고 있다. 민변 회원(1200여 명)은 전체 변호사(2만4000명)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이 서열·직급·관행·지역을 깨고 사법부 핵심요직에 대거 발탁되고 있다. 이제는 법조계 내 다양성이 아니라 편중성의 우려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월 10일 국감에서 “사법은 중립성, 공정성이 핵심이다. 편중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깊이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 또한 또 다른 축으로 법원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6년 임기의 대법관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

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이미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5명, 이명박 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1명이다). 8명의 대법관 중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회장을 지냈다.

두 달 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이 발탁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을 진보집단 출신으로 채우는 혁명적 구조를 만든 셈이다. 도를 넘은 코드 인사에 전국 3000명에 가까운 판사들과 법조계가 놀라움에 고개를 짓고 있다.

법조계가 코드인사를 우려하지만 사법개혁을 내건 쓰나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일부 법조인은 미소 짓지만 다른 판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어쩌면 ‘사법부, 너마저’라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

2. 국회 법사위 의원·민변·참여연대 등이 사법개혁 밑그림 그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선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조직이란 이유에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대법원 사무국과 법원사무처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거듭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진보 성향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회 토론회·공청회·간담회를 잇따라 열어왔다. 여기에 민변, 참여연대 등이 가세, 목소리 톤을 높이고 있다.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이들이 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양 前 대법원장의 차량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의 양 전 대법원장 자택을 방문했다가 나오고 있는 모습〉

려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들은 법원 행정처가 피라미드식 사법부 권력 구조의 핵심이라는 조직 논리를 들어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올 들어 11차례 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토론회·공청회·간담회를 열었다. 거의 매달 비슷한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용단폭격에 가깝다. 최근 토론회가 지난 9월 27일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다. 일부 고위직 법관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법복을 벗기고 망신을 주어 사법부에서 퇴출하자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민변, 시민단체, 진보 성향 법조인들은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면서 전국 재판(판사)을 하나의 기준에 의해 평균화, 획일화시켰다.”고 비난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원동일체 원칙’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무너뜨리려는 것일까. 이

유는 하나다. 사법기득권 세력의 거점이 법원 행정처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난 속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나쁜 조직인데 왜 ‘사법부 70년’ 동안 존속돼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역대 정권에서 적폐 시녀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부수면 된다.”는 식이다. 다수 법관이 침묵하는 가운데 아무런 논란없이 폐지가 결정됐다. 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법개혁이란 이름하에 법원행정처를 없앨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기득권 세력으로 비쳤을 게 뻔해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이 ‘사법적 병폐가 발생하는 중심지역’이라 비난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역대 정권 때마다 정치 외풍에 맞서 나름의 한목소리 원칙(one-voice)을 지키려 한 노력은 묻히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시녀, 사법권력의 한축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와 소장파 법관들은 “대법원-법원행정처로 연결된 법원 간부직과 엘리트 판사들이 법치를 유린하고 법리 자체를 왜곡시키고 보수적 편향성의 극대화를 가져왔다.”고 비난한다. 그 결과, 전국 3000명 가까운 판사들이 승진경쟁에 뛰어들 법관과 승진을 포기한 판사(일명 ‘승포관’)로 양분됐다고 주장한다.

“원님 재판과 판사들의 카르텔, 일부 판사들의 칼춤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법 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수는 적게 하고, 기록은 제대로 보지 않고, 이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 유죄를 판결하는 이 나라는 ‘헬조선’ 그 자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썩은 데가 사법부입니다.

제대로 공개, 공유되고 투명하게 하고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사법부부터 바뀌야 합니다. 그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이후 다음 타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제의 폐지일지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고법부장으로 발탁되기 전 하급 법관들로 하여금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자리가 재판연구관’이기 때문이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들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판사들을 말한다. 기자와 만난 민변 소속 변호사의 말이다.

“사법부에 이너서클이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요. ‘발탁 인사’로 엘리트 법관들을 법원행정 조직에 편입시켜 트레이닝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또 하급 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을 거치도록 치열한 경쟁을 부추겨 사법부 카르텔 체제 내로 편입시켜 왔습니다.”

재판연구관은 사법부 권력층의 하급법관에 대한 규율과 통제 장치라는 얘기다. 대개의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면 고위직 법관 자리에 오른다. 일종의 법조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승진코스다. 그 관행이 사법부 조직 내 불신과 불만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2012~2017년 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근무 이력과 승진율을 분석했더니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65명 중 53명(82%)이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있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심의관 출신은 22명, 재판연구관 출신은 41명이었고, 둘 모두를 경험한 판사는 10명이었다. 대법원 경험 없이 재판업무만 보던 판사는 12명(18%)에 그쳤다.

(월간조선 인용)

법무매거진

문무일 검찰총장 ‘사법개혁 열린 마음으로 참여… 국민 중심 사고를’



법조인 동정

-겸허하게 반성하고 변화 앞장서야…간부회의서 주문 ‘인력운용 정상화되면 민생범죄 등 본연에 보다 집중’

문무일 검찰총장(57세, 사법시험 제28회, 사법연수원 제18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가운데 형사사법 개혁 논의에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하고 자체개혁 노력도 중단없이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14일 대검찰청에서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도 변화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보인 모습이 국민 바람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자체 추진 중인 개혁방안과 관련한 지속적 노력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의사결정 과정 기록이나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도입 등으로 일선 업무환경이 크게 변했을 것이라며 “국민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편의보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중심으로 사고해,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앞장서 바뀌나가야 한다.”며 “새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능동적 자세를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또 “특별수사팀 활동이 순차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며 앞으로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 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최근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미온적 법 집행을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선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전문화 노력도 지속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코리아 인용〉